

**[CP사무국 뉴스 브리핑]**

**1.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 제정안 의결  
판매장려금 제도 대폭 개선으로 납품업체 부담 크게 경감**

**2. 총 10만개 사업자에 대해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제조, 건설, 용역업종 10만개 사업자 대상·부당한 단가인하 및 기술탈취 등 핵심  
불공정행위 서면조사 실시함**

-----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 제정안 의결**

<http://www.kcfc.or.kr/network/read.jsp?board=32&page=1&serialnum=15661>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회의를 개최해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심사지침)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동 심사지침은 10월 8일 이후 체결되는 판매장려금에 관한 약정부터 적용된다.

대규모유통업체들의 최근 3년간 판매장려금을 및 판매장려금 규모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납품업체들은 대규모유통업체의 무분별한 판매장려금 수령 행위를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정책과제로 지적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제 15 조 제 2 항)은 판매장려금 제도를 허용하면서도 그 범위에 대해서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정하고 있지만,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 관한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대규모유통업체들은 각종 명목으로 판매장려금을 수령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판매장려금 제도를 '판매촉진'이라는 대규모유통업법(제 2 조) 취지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동 심사지침 제정을 추진해 왔다.

심사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판매장려금 항목은 판매촉진 목적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제 2 조 제 9 호)은 판매장려금은 해당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키는 판매촉진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심사지침에서는 판매촉진 목적과 관련성이 없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을

위법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판매장려금은 직매입 거래의 속성상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위와 관련되어 수령되어서는 않된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장려금에 대해 직매입 거래 분야에서만 수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제 2 조 제 9 호)에 따라, 심사지침에서는 대규모유통업체가 직매입한 상품에 대한 가격할인 및 재고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납품업체에게 전가시키거나 법에서 금지된 반품을 하지 않음을 이유로 수령하는 판매장려금은 위법으로 규정했다. 또한 판매장려금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양자 이익에 균형되게 기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납품업자가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상품에 대한 판매를 증진시킴으로써 판매성과에 대한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심사지침에서는 판매 증진에 따른 이익이 일방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편향되는 경우는 위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심사지침 제정으로, 판매장려금 항목에 있어서 판매장려금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장려금, 무반품장려금, 시장판매가격 대응장려금, 재고소진 장려금, 폐점장려금은 금지되고 성과장려금, 신상품 입점장려금, 매대(진열)장려금은 수령이 가능하다. 그리고 기본장려금 등이 금지됨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체의 세금계산서(판매장려금 수령관련) 미발급에 따른 납품업체 애로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심사지침 제정으로 대규모유통업체들이 받고 있는 전체 판매장려금 규모는 연간 약 1 조 4,690 억 원(2012 년도, 12 개 주요 대규모유통업체 기준) 수준으로, 심사지침의 시행으로 납품업체들의 판매장려금 부담은 연간 1 조 2,000 억 원 이상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판매장려금 중 정비대상이 되는 기본장려금의 비중은 약 80%(1 조 1,793 억 원) 수준이다.

또한 판매장려금 제도가 정비될 경우 대규모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거래구조가 납품단가 중심으로 단순화·투명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현재는 대규모유통업체들이 가격 경쟁 보다는 판매장려금을 통한 수익확보 전략을 추구하고 있지만 판매장려금이 정비됨으로써 향후에는 가격인하 경쟁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판매장려금 정비를 빌미로한 현저한 납품(매입) 단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별서면실태조사 및 유통옴브즈만 등을 통해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혐의 포착시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대형유통업체간 담합을 통해 기본장려금 등 폐지에 따른 이익 감소분을 소비자가 인상으로 충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예의

주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판촉비용 전가, 광고구입 강제 등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위로 이동>

-----

### **총 10만개 사업자에 대해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http://www.kcfc.or.kr/network/read.jsp?board=32&page=1&serialnum=15649>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자율적인 법 준수의를 확산시키기 위해 9월 30일부터 2013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2012년에 이어 전 업종을 대상으로 조사하면서 보다 폭넓은 정보수집을 위해 조사대상 업체수를 2012년 6만개에서 10만개로 늘렸으며, 특히 서면미교부(구두발주), 부당 단가인하 및 기술탈취 등의 핵심 불공정행위 조사에 역량을 투입할 예정이다.

업종별로는 제조 64,000개, 건설 30,200개, 용역 5,800개 사업자가 그 대상이며, 원사업자 5,000개, 수급사업자 9만 5,000개다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시장에서 파급효과가 큰 매출액 상위업체(제조 및 용역)와 시공능력평가액 상위업체(건설) 등을 중심으로 5,000개 업체를 선정했으며, 원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하고 있는 수급사업자 9만 5,000개 업체에 대해 원사업자 응답내용의 진정성 확인 등을 위해 설문조사가 진행된다.

이번 조사는 2012년도 하반기(7월 1일 ~ 12월 31일) 하도급거래가 조사범위가 되며, 서면실태조사는 공정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 <http://hado.ftc.go.kr>를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로 나타난 법위반혐의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촉구하고 미시정업체와 조사표미제출 업체에 대해서는 추후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동 자료는 향후 하도급 관련 정책수립 및 추진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참여하는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원사업자의 관행화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차단에 크게 기여하고, 실태조사 내용에 대한 비밀을 완벽히 보장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거래중단 등 보복을 우려하여 신고를 기피하는 문제의 해소도 기대하고 있다.

<위로 이동>

-----